

대기배출원조사란 무엇일까?



대기배출원조사 FAQ

자주하는 질문

Q1 |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검증을 거쳐 최종확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다양한 대기 환경정책 수립·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장 기본부과금 산정 등 유관기관의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

Q2 | 대기배출원조사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제94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각 시군구 소속의 담당자가 경중을 판단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Q3 | 4·5종 대기 사업장의 경우도 SEM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서 4종 또는 5종 사업장은 “SEMS에 입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 중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대기배출원조사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관련 시설현황, 운전사항, 자가측정정보 등 약 150여개 항목을 수집하는 조사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

조사 대상

대기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대기배출원조사 대상에 포함



1~3종 사업장

약 4,500개



4~5종 사업장

약 55,0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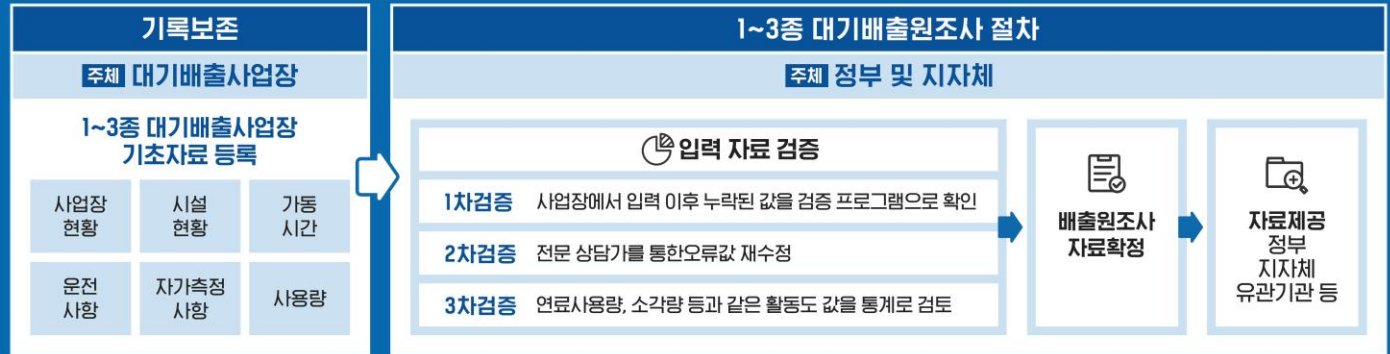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주소 [2816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6 백천빌딩 4~6층
대표번호 043-279-4500 홈페이지 <https://www.ai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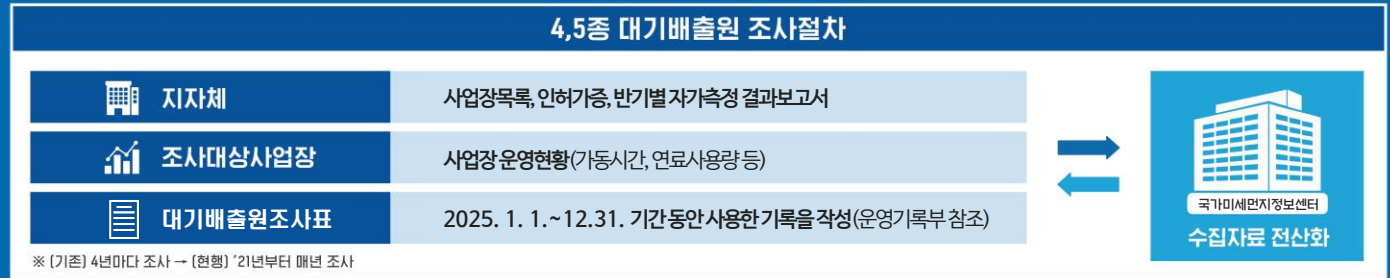
1~3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

환경기술인이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한 사업장의 일반현황, 시설정보, 자가측정결과, 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배출원을 조사



4·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

4, 5종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을 이용하거나, 지자체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직접 제출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이란?

허가 및 신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시스템

